
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벨류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4호[주식]

2. 주요 변경 사항 :

- ①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② 오기정정

3. 시행일 : 2021년 07월 15일

4. 변경대비표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9 조(수익 권의 분할)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.
제 14 조(수익자명부)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 (이하 생략) ③ (생략) ④ 집합투자업자는 (중략)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(이하 생략)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(이하 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 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전자등록기관 은 관련법령 (이하 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집합투자업자는 (중략) 이를 전자등록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 전자등록기관 은 제4항에 따라 (이하 현행과 같음)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은 그 통보받은(이하 현행과 같음)
제25조(판매 가격)	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(중략)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(이하 생략)	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(중략)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27조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(중략)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(중략)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
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	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(중략)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(중략)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	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(중략)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(이하 생략)	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(중략)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다. 다만,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	(신설)	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는 별

<p>신탁업자의 변경)</p>		<p>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.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2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 <p>⑤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<u>대상금액: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료 등)</u></p> <p>2. <u>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⑥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190조 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	<p>② 1~4 (생략)</p> <p>5.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제1항제3호 및 (중략)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② 1~4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시행령제 224 조의 2 에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<삭제></p> <p>④제 1 항제 3 호 및 (중략)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</p>	<p>⑤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	<p>⑤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
<p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	<p>⑦제5항의 규정에 (중략)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(이하 생략)</p> <p>⑧제6항의 규정에 (중략)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(이하 생략)</p>	<p>⑦제5항의 규정에 (중략)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 <p>⑧제6항의 규정에 (중략)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<p>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)</p>	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</p>	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<u>서</u></p>

거래)	장거래약관“(이하 생략)	<u>축약관” (이하 현행과 같음)</u>
부 칙	(신설)	<u>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 년 7 월 15 일부 터 시행한다.</u>